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717
------------	------

2020년 9월 8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우형찬 의원 외 10명

나. 제안일자 : 2020년 8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라. 상정일자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교통위원회(2020년 9월 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우형찬 의원)

가. 제안사유

- 최근 플랫폼 기반 택시산업 환경의 변화와 ICT를 기반으로 하는 택시 차고지 밖 교대근무 등을 실증특례로 지정('20.7.27.) 관리하는 등 택시산업의 제도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 내용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택시업체 노사간 갈등문제를 최소화 하고 효율적 택시 운영을 통해 택시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택시산업 제도변경을 고려하여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에 대한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
- 포상금지급대상 중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와 별표 위반 행위 중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을 최소화 하고자 함(안 제3조,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8.29.~2020.9.2.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원안가결¹⁾

-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포상금 전문 신고자들의 불충분한 증거자료와 무분별한 신고 및 그에 따른 소송 등으로 법인택시사업자들의 민원 발생이 지속되었음
- 신고포상금에 대한 조례규정을 폐지하더라도 사업개선명령에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 처분 규정이 있어 행정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함

1) 택시물류과-33787(2020.8.24.)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차고지 밖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당초 제정 및 개정 목적과는 달리 불충분한 증거자료와 포상금만을 노린 차고지 밖 위반행위 신고로 청문절차에 따른 택시업계의 어려움과 행정처분을 위한 서울시의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관련 법²⁾에 따라 택시이용 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업개선명령으로 차고지 밖 교대를 금지하고 있고, 현행 조례는 포상금 지급대상³⁾과 지급기준⁴⁾에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를 규정하여 관련 규칙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⁵⁾하고 있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 (생략) ~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생략) ~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4)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현행 조례는 당초 2007년 시장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법 위반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하였으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한 차례 심사보류 후 2008년에 수정 가결되어 시행되었고,

지입제 및 도급제 등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조례의 당초 제정 목적과는 달리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만이 집중적인 신고대상이 됨에 따라 2013년 신고포상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14년 관련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별 연도별 포상금 지급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조례가 제정된 2009년 이후와 조례가 개정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전체 신고건수 중 차고지 밖 관리운영 금지 신고(97.1%) 및 포상금 지급액(98.5%)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당초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목적과는 달리 포상금 수급이 쉬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가 집중되고 있어 택시업계 내부의 자정

5)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9조(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① 조례 제3조제1항제5호, 제8호, 제10호에서 정하는 신고포상금은 처분건별로 별표 2와 같다.

[별표2]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제9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항목	포상금 지급액(원)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200,000

노력을 독려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조례 운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할 것임

※ 참고 : 여객자동차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만원)

위 반 행위별	합 계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개인택시 부제 위반	
	건 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2009	112	11,140	1	200	2	200	107	10,700	2	40
2010	37	3,140					30	3,000	7	140
2011	66	6,440					64	6,400	2	40
2012	38	2,760					25	2,500	13	260
2013	87	8,820					87	8,700		120
2014	373	30,420			1	100	372	30,320		
2015	182	9,900					182	9,900		
2016	47	1,020					46	1,000	1	20
2017	5	340					5	340		
2018	36	720					36	720		
2019	1	20					1	20		
2020	22	440					22	440		
합 계	1,006	75,160	1	200	3	300	977	74,040	25	620

- 또한, 차고지 밖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처분은 이미 폐지된 일명 “카파라치 제도”⁶⁾와 유사한 제도를 의견수렴 절차 없이 도입한 점, 도급제 및 지입제 등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보다는 특정 항목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이 집중됨에 따라 소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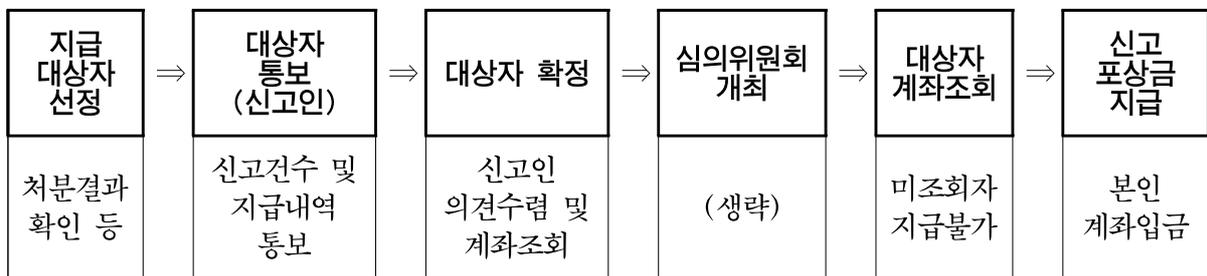
6) 도로교통 법칙신고 포상금제(카파라치)

- 시행근거 : 경찰청 지침 - 시행시기 : 2000년 - 폐지시기 : 2003년
- 폐지사유 ① 모든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제도상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회의 지적과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중단 ② 제도도입으로 인해 얻는 공익적인 이익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시행효과가 부적절하다는 정부의 판단

신고자가 전체 신고건수와 포상금의 대부분을 차지⁷⁾하는 등 전문 신고자를 양산시키고 있다는 점,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⁸⁾ 등으로 서울시의 행정력 낭비가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택시운송업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고, 반복적인 소송과 행정심판 등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임

※ 참고 : 신고포상금 지급절차⁹⁾



1. 지급조건(대상)이 확정된 신고건을 대상자로 확정
2. 2019년부터 신고건수가 적고 지급범위가 소규모로 민원해소 및 행정처리의 신속성을 위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생략

7) 차고지 밖 위반행위 관련 행정처분 현황(2010~2020년 현재)

구 분	인원수(명)	전 체 신고건수(건)	지급금액(천원)	비 고
전 체 신고자	140 (100.0%)	870 (100.0%)	633,400 (100.0%)	
전 문 신고자	24 (17%)	707 (81%)	497,800 (78.6%)	'14.1.9. 포상금액 조정(100만원→20만원)

8) 차고지 밖 위반행위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2013~2020)

- 총188건(소송 74건, 행정심판 114건)

9) 2020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택시물류과-16190(2020.4.20.)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
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5
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반행위별 신고·고발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 관련)

위반 행위	포상금액	비고
1.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0원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000,000원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0,000원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0,000원	
5. 개인택시 부제 위반	200,000원	
6.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7.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8.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 요금 징수행위	500,000원	
9. 불법 유상운송 행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1. ~ 4. (생략)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6. ~ 11. (생략)

[별표]

위반행위별 신고·고발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 관련)

위반 행위	포상금액	비고
1.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0원	
2. 법인택시 명의 이용금지 위반행위	2,000,000원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0,000원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0,000원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6. 개인택시 부제 위반	200,000원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500,000원	
10. 불법 유상운송 행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11.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5. ~ 10. (현행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별표]

위반행위별 신고·고발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 관련)

위반 행위	포상금액	비고
1.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0원	
2. 법인택시 명의 이용금지 위반행위	2,000,000원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0,000원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0,000원	
5. 개인택시 부제 위반	200,000원	
6.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7.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8.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500,000원	
9. 불법 유상운송 행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